

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 목욕시설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2009.09.08.
복지도시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9.08.21. 마포구청장
- 나. 회부일자 : 2009.08.24.
- 다. 상정일자 : 제147회 임시회 제3차 위원회(2009.09.08)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곽 영 순 사회복지과장

가. 제안이유

장애인, 노인 등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·운영하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 목욕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.

나. 주요내용

1) 설치 및 명칭

가) 서울특별시 마포구 난지도길 21(성산동 595) SH공사 성산아파트
임대상가 제24호에 설치함

나) 목욕탕 명칭은 “마포복지목욕탕” 으로 함

2) 운 영

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 하며, 효율적으로 관리·운영하기 위해 법인·단체·개인에 위탁할 수 있음.

3) 시설개방 및 개방제한

가) 개방시간은 05시 30분 ~ 20시까지로 하되, 수탁자가 구청장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으며 매주 요일을 지정해 장애인 등에게 우선 이용하도록 할 수 있음.

나) 매월 정기 휴무일, 시설보수, 시설 이용 시 현저한 위험 예상 시, 그 밖에 수탁자의 요청으로 구청장이 승인하는 경우 개방을 제한할 수 있음.

4) 이용료 등

구청장은 아래와 같이 해당되는 자에 대해 할인 또는 감면할 수 있음.

: 장애인, 경로우대자, 수급자(시설수급자 포함), 한부모가족, 국가유공자, 중증장애인(1급,2급)을 동반하는 보호자,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동반하는 보호자, 미취학 아동, 중증장애인 및 노인 등에 대한 목욕 봉사 등을 하고자 하는 자원봉사자,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

5) 수탁자 선정 및 의무

가) 공개모집으로 선정하되, 수행에 필요한 인력, 기구, 장비, 시설, 기술 수준을 갖추고 재정적인 부담능력과 공신력이 있는 자

나) 수탁자는 위탁시설·장비·예산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 사용금지

6) 목욕탕 이용료 및 할인·감면 요율표

구 분	이 용 료	비 고
일 반 인	4,000원	
장 애 인	2,000원	50% 할인
경 로 우 대 자	2,000원	
수 급 자	2,000원	
국 가 유 공 자	2,000원	

한 부모 가족	2,000원	
보호자	2,000원	
미취학 아동	2,000원	
자원봉사자	무 료	- 중증 장애인 및 거동이 불편한 자의 목욕을 보조하기 위하여 동반하는 자

3. 검토보고 (김건재 전문위원)

0 본 조례안은 장애인, 노인 등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·운영하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립 목욕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, 주요내용을 보면, 구립목욕시설의 명칭은 “마포복지목욕탕”으로 하고, 효율적인 관리·운영을 위하여 법인·단체 및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, 수탁자는 목욕탕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음.

구청장은 장애인이나 경로우대자, 수급자 등에게는 이용료를 할인 및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고, 수탁자는 이·미용 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자에게 실비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.

0 마포구 구립 목욕시설은 SH공사 성산아파트 상가내 폐업중인 목욕탕을 무상 임대받아 개·보수 후 설치·운영하는 목욕탕으로 저소득층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이 필요한 시점에서 주민의 건강증진 및 복지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적절한 사업으로 판단됨.

0 본 조례안 중 수정할 사항을 보면, 안 제8조제7항에 구청장은 상황에 따라 이용료, 할인 감면요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「지방자치법」 제139조에 사용료·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, 안 제8조제1항에서 목욕탕 이용료

및 할인·감면요율을 별표에 규정하였고, 이에 따른 이용료 및 할인·감면요율 조정은 조례개정을 통해서 가능하므로 안 제8조제7항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.

안 제9조제1항에 입장권은 수탁자 혹은 수탁자가 지정하는 단체 및 개인에게 위탁 판매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입장권 판매 주체 및 대상에 혼선이 우려되는바 조문을 다시 정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5. 토론요지 : 없음
6. 심사결과 : 수정가결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8. 기타 : 없음